

#### [서식 예] 손해배상(기)청구의 소(계약불이행)

## 소 장

원 고 의료법인 ○○재단 ○○시 ○○구 ○○길 ○○ (우편번호) 대표자 이사장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생약협동조합
○○시 ○○구 ○○길 ○○ (우편번호)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1. 원고재단은 ○○한방병원 등을 설립·경영하는 의료법인으로서 2000. 1. 30. 원고 재단은 피고조합과 한약재 공급계약을 체결한바 있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필요로 하는 한약재의 생산·채집 및 공급을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고, 그 연간 생산계약과 공급가격 및 품질검사방법에 관하여는 매년 상호합의하에 결정하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재단 사무국장인 소외 박〇〇는 원고재단의 대표자를 대리하여 피고조합의 위 계약에 기한 구체적인 한약재 수요공급계약을 체결한바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피고조합은 2000. 8. 30.까지 한약재 5,000근을 근당 가격 금 10,000원에 원고재단에게 공급하기로 하고, 원고재단은 피고조합에게 계약금으로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재단이 계약을 위약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피고조합이 위약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2. 그 뒤 피고조합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하기로 한 약정기일인 2000. 8. 30.까지 위 한약재를 공급하지 않고 있어 원고재단은 2000. 9. 30.까지 약정 공급수량인 5,000근의 한약재를 공급하지 않으면 2000. 10. 1. 위 계약이 해제될 것임을 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조합은 위 한약재의 공급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계약은 2000. 10. 1. 해제되었다 할 것입니다.
- 3. 따라서 원고재단은 피고조합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계약서상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인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10. 1.부터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공급계약서

1. 갑 제2호증 통고서(내용증명)

###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 ○ ○ ○

 위 원고
 의료법인 ○ ○ 재단

 이사장 ○ ○ ○ ○ (서명 또는 날인)

# ○○지방법원 귀중



관 할 법 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 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ul> <li>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li> <li>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li> <li>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대법원 1997. 6. 10. 선고 95 다37094 판결).</li> </ul>		

#### ※ (1) 관 할

-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민법 제467 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 (2) 소멸시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채권의 확장 내지 변형이므로 일 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고(민법 제162조 제1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 함(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4269 판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